

I

공사개요

1. 공 사 명 : 부산광역시 50+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

2. 공사목적

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50+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3. 공사장소

부산광역시 부산 동래구 낙민동 25-1

4. 공사범위

가. 지상4층

1층 521.80M2 / 2층 1,059.73M2 / 3층 679.06M2 / 4층 657.27M2

5. 공사기간 및 유의사항

가.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로 한다.

나. 공사의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다. 공사 완료 후라도 공사와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(인·허가등), 관련자료의 제출과 공사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 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.

라.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- 1)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
- 2)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
- 3)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
- 4) 기타 법률상 필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

Ⅱ

세부 공사지침

1. 목 적

본 과업지시서는 「부산광역시 50+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」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과업지시서로서 운영상 문제가 없고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일의 책임

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공사는 「부산광역시 50+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」를 하기 위함이며,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.

3. 관련법규

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과업수행은 지방계약법, 건축·전기·기계·소방·통신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
4. 감 독 관

- 가.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시공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당 기관에서 임명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나.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, 연락,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.
- 다. 시공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협의를 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한다.

5. 자료제출

발주처는 착공계, 현장대리인계, 준공계,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6. 사고의 보고 및 책임

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일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한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 보고하며, 공사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,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며, 시공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모든 민, 형사상 문제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조치한다.

7. 설치 전 보양 및 설치 후 청소

시공자는 공사 전 존치 부위를 보양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사업 완료 후 환경 정리를 실시한다.

8. 설계변경

공사 시공도중 과업지시서와 현장의 실제 시설과의 상이, 즉 과업지시서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설계 변경 요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.

9. 안전관리

본 공사 시공에 관한 안전관리는 시공자가 안전사고 공사 시공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장소의 청소 및 정리를 하여야 한다.

Ⅲ

과업 일반지침

1. 기존 시설과의 관계

기존 시설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되며, 영향을 줄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한다.

2. 사용 기자재

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KS, 환경인증제품 또는 Q마크를 득한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동등이상 상품이 없을 경우 납품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.

3. 설치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

본 공사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,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질의 응답된 사항에 대한 설치 자재의 변경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야 한다. 또한, 질의 응답이 없는 상태로 계약된 때에는 주요 기자재의 변경 또는 추가요인이 발생되어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.

4. 준공검사 및 시운전

가. 준공검사는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공사의 시공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) 수량 및 외관상태
- 2) 동작 및 성능시험

다.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5. 사진첩 제출

시공자는 설치 전, 설치 후가 명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.

6. 기타사항

본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